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5.10.29(토)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5.10.28	매 수	총 4매
정책홍보 담당관실	담당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성과	과 장 김재식 사무관 조철희	031)436-8616 ~ 7 (011-9045-7735) 031)436-8616 ~ 7 (019-253-3631)		

과학기술인의 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의 활성화 기대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 명)에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노후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에서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이 금년 12월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일한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법적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동안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추진하던 퇴직공제사업은 법정 퇴직급여제도로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고 퇴직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채택·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제회의 퇴직연

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추가부담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급여 운영상황 통보 및 운영실적의 제출, 급여수준·급여의 종류·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수급권보호와 퇴직연금급여사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이 금년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법적장치 미비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안에 과학기술부령 제정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변경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문의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조철회사무관(전화 031-436-86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사업내용의 개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 사업을 퇴직연금제도를 반영하여 퇴직 연금급여와 공제급여로 구분 (개정안 1,2호)

○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16조의 2 신설)

-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퇴직 연금급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함. 아울러 회원이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원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다만, 회원이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음
-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은 부령으로 정함

○ 퇴직연금급여 수급권 보호 (제16조의 3 신설)

- 퇴직연금수급권을 부령이 정하는 요건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회원에 대한 운영상황 등의 통보 (제16조의 4 신설)

- 공제회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원에게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알려주도록 함

- 퇴직연금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16조의 5 신설)
 - 공제회에 퇴직연금사업 운영실적 등을 매년도 사업종료 3개월 내에 사용자 및 과하기술후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부칙개정
 - 퇴직연금제도(제16조의 2-6)의 발효시점을 '05.12.1로 함
 - 법개정 이전 퇴직공제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일을 퇴직연금 급여제도 가입 일로 인정함